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62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윤후덕·김준형·정준호

김정호 • 홍기원 • 김병주

임오경 · 김주영 · 박수현

이기헌 · 김태선 · 김영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6조의7제3항, 같은 조 제4항·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평가항 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은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그 밖에 통일교육의 방법, 실시 시기, 결과 제출 및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의7(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	제6조의7(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		
교육의 실시) ① · ② (생	교육의 실시) ① · ②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	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		
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	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		
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	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	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<u> </u>		
<u> </u>			
<u> </u>	④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		
	파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		
	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		
	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		
	결과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킬		
	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의 구체		
	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		
	행정기관・지방자치단체 및 공		
	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		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
<u><신 설></u>	⑤ 그 밖에 통일교육의 방법,		
	실시 시기, 결과 제출 및 통일		
	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에		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	
	<u> 정한다.</u>		